

대법원 2014. 1. 16 선고 2013다214819 판결 [압류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

AAA개발위원회

피 고

대한민국 외 1명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2014. 1. 16.

판 결 선 고

2014. 1. 16

주 문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
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